

알기 쉬운 공정거래법 (3)

- 경제력집중의 억제 -

정 환 /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론

지난 호에 이어 이하에서는 독점규제에 관한 부분 중 경제력집중의 억제(제3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들은 경제력집중에 의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계열기업간의 자원공유, 원재료의 공동구매, 마케팅활동의 공동추진으로 인한 물적 자원의 절약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력집중을 통하여 사업다각화에 의한 위험의 분산, 첨단산업의 효과적 추진 및 기술개발로 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업규모의 확대로 인한 대외인지도와 공신력의 증진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됨에 따라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의 제한이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대되고,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와 지급보증 및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불건전 경영으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며, 대규모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계열기업이나 그와 하도급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그 여파가 국민경제 전체에 비치고 그 부담 또한 국민에게 전

가되며,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기의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요한 경제정책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규모 기업집단이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른 기업보다 광범위한 금융지원과 혜택을 받게 되어 결국 경제주체간의 기회의 불균등을 가져오게 되는 바,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기업의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에 관한 부분으로서 제3장에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은 ① 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금지 등(동법 제8조),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 통지 등(동법 제14조), ③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 등의 신고(동법 제13조), ④ 상호출자의 금지 등(동법 제9조), ⑤ 출자총액의 제한(동법 제10조), ⑥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동법 제10조의 2), ⑦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의결권 제한(동법 제11조), ⑧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동법 제14조의 2) 및 ⑨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동법 제14조의 3)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금지

그동안 지주회사는 독과점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지주회사에 의해 시장경쟁기능이 저해되어 왔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지주회사의 개념, 범위 및 요건

(1) 지주회사의 개념 및 범위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공정거래법 제8조 제1항)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 본문). 그러나, 당해 회사의 출자규모, 출자목적, 출자비율 등을 참작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 단서).

(2) 지주회사의 요건

공정거래위원회가 1990. 4. 12. 제정한 지주회사의 범위에 관한 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이라 함)에 의하면 지주회사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으로 ①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것(이하 “지배목적요건”이라 함)과 ② 다른 국내회사의 지배를 당해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이하 “사업요건”이라 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

심사요령은 지배목적요건과 관련하여 ㉠ 다른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 회사(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함)가 피출자회사(이하 “상대회사”라 함)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상대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 당해 회사가 상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대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상대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대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지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증권회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 은행이 금전 및 유가증권의 신탁에 관한 신탁재산으로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심사요령은 사업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된 사업이 다른 회사의 지배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 주식의 합계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유주식 중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합산하며, 주식 및 자산의 가격은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자산의 감소로 보유주식총액이 자산총액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1년간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금지의 예외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및 ②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공정거래법 제8조 제2항).

3. 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금지 위반의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16조 제1항), 위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67조 제6호).

공정거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동법 제18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지주회사의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4. 탈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동법 제15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금지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조치 및 형벌이 적용된다(동법 제16조 제1항, 제67조 제6호, 제66조 제1항 제7호).

대규모기업집단의 의의 및 지정·통지 등

1. 대규모기업집단의 의의

(1) 기업집단의 개념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여기서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며,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동일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i)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함)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하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함)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또는 (ii) 다음 ⑦ 내지 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의미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 ①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②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④ 동일인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⑤ 동일인 및 동일인과 위 ② 내지 ④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함)
- ⑦ 동일인인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⑩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⑩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함)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 ① 내지 ⑩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겹임이 있는 경우
 - 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함)
 - ⑥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⑩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2) 대규모기업집단의 개념 및 범위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함)의 합계

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그러나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④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이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및 ⑤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 통지 및 제외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는 소속 회사들의 자산총액(일정한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며(동법 제14조 제1항),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제4항), 위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

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68조 제1호), 위 자료요청을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 ·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 통지일 또는 ②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 · 통지된 것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3.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 통지의 효과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는 ①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② 출자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제한되며(동법 제10조 제1항), ③ 대규모기업집단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그 소속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가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제한되고(동법 제10조의 2 제1항),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되며(동법 제11조),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 채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제한 · 금지 · 신고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날부터 적용된다(동법 제14조 제2항).

한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항 및 제3항,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 또는 제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 및 채무보증총액을 각각 출자한도액 및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제3항).

4.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일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되면 자산총액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회사(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한다(공정거래법 제14조의 2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동법 제14조의 2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의 2 제3항).

5.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채무현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공정거래법 제13조 제1항),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위 각 신고는 매년 4월 말까지 또는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하고,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서에는 ①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②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및 ③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을, 채무보증현황 신고서에는 ①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및 ② 당해 회사의 자기자본·채무보증한도액·채무보증총액 및 피채무보증총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2 제1항).

한편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서에는 ① 당해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②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및 ③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채무보증현황 신고서에는 ①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를 및 ②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0조의 2 제2항). ■

내 삶의 노래

'고향'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
도 가슴 설레이게 하는 말이
고, 무언가 사무치게 그립도
록 만드는 말이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고향'이 있다. 내 고향은 정조대왕이 수도를 옮길 생각으로 200년전에 성곽을 쌓았다는 고적 도시 '수원'이다.

우리 아버님이 사시던 곳은 경북 상주로, -나는 지금까지 그곳을 가본 적이 없다.- 그곳에는 '강릉 崔'씨 집성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님이 장터에서 선교사들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상투를 자르고 교회 신자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을에 돌아와 성황당이나 무속을 미신이라고 비난하고 동네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설교하고 다니니, 노인들이 그만 '서 양귀신이 죄었다'고 들고 일어나 결국 마을을 떠나야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수원, 용인, 원주 등 각지를 다니며 교회를 많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목수였던 아버님이 다른 분들과 함께 적산가옥을 헐어 지었다는 수원 남문(팔달문)밖의 돌로 지은 수원장로교회는 지금 봐도 꽤 크다. 이 교회는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아 예배를 보았는데, 장시간 걸리는 예배시간이 어린 나로서는 고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기어다니고, 누워서 뒹굴거리다 보면 2층 창밖에 커다란 나무가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 보며 '이~ 놈'하는 것 같아 깜짝 놀라곤 했다.

한편, 내가 태어난 곳은 원주인데 한살 때 수원으로 이사를 왔으니, 그곳에 대한 기억이 없다.

고향 서점

최현철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사무관

그래서 나는 나의 어려서의 추억과 꿈이 배어있는 수원을 내 고향이라고 말한다.

수원의 4대문안이 내가 아는 세계의 전부였다.

내가 수원에서 처음 살던 곳은 북문(장안문)밖에 있는 영화동인데, 어린 나에게는 내가 살던 집이 하나님의 '소우주'였다. 앞마

당에는 멀쑥이 키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뒤뜰은 제법 넓어 토끼장과 무궁화나무, 앵두나무 등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있었다. 당시 나는 매일 토끼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일과였는데, 풀을 뜯어다 철망 사이로 디밀면 하얀토끼들이 새빨간 눈으로 우르르 달려들어 서로 다투고, 아작아작 풀을 씹어 먹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재미있었다. 나는 학교에 다녀오는대로 책가방을 마루에 집어 던지고 토끼장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내가 다니던 영화초등학교는 산(지금 생각하면 구릉) 중턱에, 흙벽돌로 지은 몇 개 안되는 단층 건물, 손바닥만한 운동장에 철봉 몇 개 있던 전형적인 시골학교였다. 논두렁 따라가는 등교길 양옆은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 꽃들이 피었는데, 아이들은 벌을 잡기 위해 검은 고무신을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날쌘 동작으로 벌을 나꿔챈 후, 빙빙돌려 힘껏 땅바닥에 내리치곤 하였다.

학교앞에는 논이 있어서 학교가 끝나면 몇몇 녀석들과 함께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흙 장난을 할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께서 호랑이그림이 있는 가죽배낭을 사 주셨는데, - 그 가

방을 등에 메고 뛰면 달가닥 소리는 요란했지만,
너무나 신이 나서 학교까지 날아갈 것 같았다. -
며칠도 안 돼 눈에서 노느라 가방을 잃어 버렸다.
으이그~ 그때 생각하
면 지금도 속이 쓰
리다.

최근에 위
궤양 치료
까지 받아
야 했던
것이 그때
의 후유증
이 아닌가
생각한다.

1학년 중반에
신풍동으로 이사를 갔
다. 그곳의 신풍초등학교는 강감찬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있는 팔달산 밑에 자리잡고 있는, 나름대
로 역사도 깊고 4대 문안에서는 제법 큰 학교다.
우리가 이사간 곳은 학교담장을 끼고

뒤로 돌아가 있는 작은 동네였는
데, 그곳에는 화령전이라는
유적지가 있다. 화령전은 지
금은 복원되어 화려하게 단
장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황
폐되어 담장은 허물어지고 가
을이면 뜨락이 온통 코스모스
로 숲을 이루었다. 그럴때면
우리는 이 속에 본부를 꾸미고
군사를 모아 편을 갈라 병정놀이
를 하는데, 숲과 화령전 마루 밑, 그
리고 운동네가 전장터였다. 그럴때면

나는 목에는 검은 보자기를 두르고, 한손에 막대
기, 등에는 엉성한 활을 차고 다녔다. 요즘 애들
은 왜 이렇게 안노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얼마나



재미있는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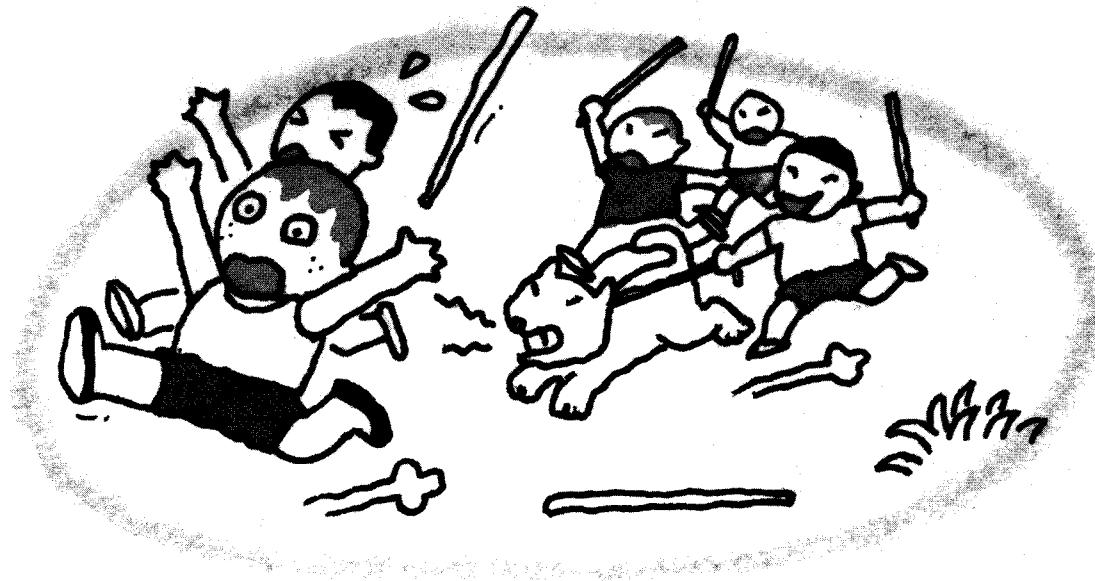
수원의 화령전은 나의 무대였다.

한번은 옆동네와 전쟁을 있다고 쳐들어 간 적
이 있는데, 당시 막내였던 내 눈으로도 이미
그 동네는 우리와 같은 구식 병정놀이를
하지 않는 문명된 세계였다. 전혀 전쟁준
비가 없었던 이 평화스럽고 착한 동네아
이들은 그만 침략의 무리로부터 줄지에
구슬, 딱지같은 보물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유’. 그 동
네아이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비겁하게시
리 커다란 개를 앞세워 쳐들어 온다는 것이
아닌가. 엄청난 화력앞에 겁을 먹은 우리 병사
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 캄캄해질 때까지 내려올
수가 없었다. 그후 두번다시 이웃 마을을 쳐들어
가는 일은 결코 없었다.



운동회, 하늘 가득하던 만 국기 그리고 합성

나는 어렸을
때 비록 몸은
비쩍 말랐지
만, 그래도
싸움은 잘하
는 편이었던
것 같다. 4학
년때가, 운동
회에서 기마전
을 하는데 기수자
리가 하나 남아, 선생님
이 아이들에게 누굴 뽑았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으니 일제히 나한테 손가락이 향했다. 선생님



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팬들의 성의에 보답하고자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결국 결승전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이미 기진맥진한 몸이었지만 마치 화랑 관창처럼 화살이 빗발치는 적진을 돌진하여 선두로 나오는 녀석을 단칼에 베고 떨어뜨리고, 종횡무진으로 돌진하던 차에 결국은 적들에게 포위되고 장렬한 전사를 하고 말았다. 그 때 운동장과 하늘에 가득찼던 만국기와 환호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후 4학년을 마친 겨울방학중에 당시 누님이 사시던 '미지의 세계'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중충한 수원역 플랫홈에서, 요란한 기적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를 힘차게 내뿜으며 달려오던 검은 증기기관차 모습은 지금도 한장의 흑백사진처럼 가슴속에 깊이, 너무나 찌~인하게 남아있다.

수원성 옛터를 필ما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하고 인걸은 간데 없네.

지금의 수원의 4대문 초등학교의 앞길은 왕복 8차선 산업도로로 뻥뚫린 시가지로 변하고, 내가 다니던 유치원(영화교회)도 제법 큰 교회가 되었다. 수원성 외곽은 거대한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4대문안도 인구가 늘면서 아이들과 멱猗던 개울은 이미 생활폐수로 오염되고, 화홍문 앞 대장간들과 그 앞을 지나다니던 우마차들과 때만되면 소, 돼지, 닭 울음소리로 요란하던 영화동 장터는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그런대로 4대문안은 당시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4대문안에 대하여 개발제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행여나 나 때문에 이곳을 유적지구로 보존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

언젠가 나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에 대한 전설이 배어있는 이 곳을 하나하나 돌아 볼 생각이다.

'내가 이 곳에 살았었다.' 고 말하려 한다. ■

어물매점(魚物買占)

이용선 / 전주일보 주필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부르던 민요가락에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라는 노래가 있다. 옹배기에다 물을 가득 붓고 그 물위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둘러앉아 치는 장단으로 신명나게 부르던 민요다. 처음에는 고약한 생각이 들었다. 여편네들이 험한 바다로 명태잡이를 떠난 남편들의 무사안녕을 빌지는 않고 “바람아 강풍아 석달 열흘만 불라.”니 그 강풍에 배가 뒤집혀 버리라는 말인가. 고기잡이 어부서방이 죽으면 면서기 다니는 하이칼라 샛서방을 엄여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심사가 썩 꽤磋商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여자는 두레박 신세고 믿을 것이 못된다고 사람들이 경계했던 모양이다.

실제로 70년대에 한창 제비족들이 설치고 춤바람이 유행했을 때 바람난 여자들은 “월남전에 나간 서방은 쟁돈이나 부쳐주고 꽉 뺀어 버리라.”하던 유행어도 있었다. 항락주의가 사회의 윤리도덕을 좀먹는 무서운 풍조이기도 했다.

그래서 고약한 명태잡이 민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내 생각이 깊지 못하고 좁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겨울 함경도 바다에서 형성되는 명태어장에는 전국에서 수백 척의 어선이 몰려 들었다. 그런데 한겨울 바다위에서 벌어지는 명태잡이 어장에는 바람과 파도와 강추위가 혐해야 풍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달 열흘의 강

풍은 바로 풍어를 기원하는 아낙네들의 민요가락이었던 것이다.

이런 명태는 우리 나라 해물 중에서도 조기와 함께 가장 큰 돈이 되었다. 안 먹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소비되었던 탓이다. 조기는 집집마다 쓰는 제수품(祭需品)이니 안 살 수 없고 명태는 역시 집집마다 국거리, 찬거리, 하다못해 무당 푸닥거리 한 번을 하려고 해도 마른 명태 한 마리가 백지(白紙) 한 권은 있어야 굳이 된다.

이래서 이런 조기나 명태를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많았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해물객주(海物客主)들이 실권을 잡고 「값 올리기」 작전을 하는 것이다.

“객주님, 이번에도 이백냥만 빌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나더러 돈을 빌어 달라고?”

“아저씨가 저를 안 빌어주면 무얼 가지고 출어를 합니까. 배도 고쳐야겠고 그물에다 어부도 모으고 또 쌀도 팔아야 바다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출어자금을 대 달라 이것인가?”

“예.”

“자네는 민네만, 그래도 무슨 담보가 있어야 지 나도 마음을 놓지.”

“담보는 없지만, 그대신 이자는 비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네가 바다에 나가서 잡는 고기는 나 한테만 팔아야 하네.”

“그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전주(錢主)는 어부에게 출어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대신 그 어부가 잡는 해물을 매점하게 된다. 해물값이 싸건 비싸건 자기 고기를 담보로 하고 출어자금을 얻었으니, 「돈을 빌려준 은인」에게 비싼 고기값을 쳐 달랄 수는 없다. 이래서 통상적으로 거래가격보다 30% 정도는 싸게 넘겼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형태는 그 시대에는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이다. 한 번 먼 바다로 출어한 배가 많은 고기떼를 만나면 배에다 더 실을 수 없을 만큼 풍어를 이룬다. 배에 고기가 가득 찼으니 육지로 돌아가서 그 고기를 풀고 다시 바다에 나와 고기잡이를 하자니 그 동안에 사리가 넘어가 버린다. 고기잡을 물때를 놓쳐 버린다는 얘기다.

이래서 한 번 출어한 배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동안 돈을 빌려준 전주는 현장으로 운반선을 보내 잡은 고기를 헬값에 사서 육지로 나르는 것이요, 바다 가운데 어장에서 생물을 사고 파니까 육지 고기값의 절반 이하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고기를 잡는 어선과 그 어선에 출어자금을 대 준 전주는 한쪽은 잡고, 한쪽은 사서 실어 나르는 등의 협업형태를 이루어왔던 것이다. 근세에 와서는 그런 형태의 거래방법도 대자본의 매점매석으로 탈바꿈되어 버린 것이다.

33인 독립선언서의 한 분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도 한 때는 서북지방 제일의 부자였다. 등침을 지고 다니는 유기장수에서 발신한 뒤 서울로 올라와 전주한지(全州韓紙)를 매점하여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매점매석 상술

때문에 돈을 내버린 사람이다. 그가 도산 안창호의 애국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아 정주(定州) 오산학교를 세웠던 일 등은 사업에 실패하여 큰 돈을 거의 다 없애고 난 뒤에 깨닫고 제2의 인생을 산 행적이었다.

대상인 이승훈은 1904년 러일전쟁때 전국 쇠가죽을 매점하여 한강 백사장 위에 널어 말리며 군수물자의 폐돈 벌이를 꿈꾸었다가 전쟁이 허망하게 끝나는 통에 쇠가죽을 죽쑤고 패상(敗商)의 쓴 잔을 마셨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쓴 잔은 마실수록 쓴 잔을 더 당기는 법이다. 쇠가죽으로 망한 대손(大損)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원산으로 나가서 명태를 매점해 버렸다.

그렇게 명태를 매점하여 쌓아놓고 「값만 오르라」고 빌었던 것이다. 그런데 명태 시세는 그 해 한겨울의 동태잡이가 흉어가 되면 값이 올라 매점 행위가 성공하지만 만약 설달 대목에 동태잡이가 풍어를 이루면 값이 폭락해 버렸다. 운반수단과 소비경로는 한정돼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명태가 쌓여 값이 폭락하는 것이다.

이승훈도 그 해 겨울의 동태 풍어로 또 죽을 죽고 망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원산 명태의 어를 매점은 철도가 없고 화물선이 넉넉지 못해 수송방법이 낙후했던 탓이다. 많이 잡혀도 수송력이 강하고 그래서 소비지역이 더 광활해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때는 철도도 없었고 화륜선도 빈약했다.

그런데 지금도 해물을 가지고 매점매석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자금력이 빈약한 원양어선들에게 재벌들이 출어자금을 빌려주고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같은 것을 현물로 받아 창고에 쌓아두고 어물 시세를 조종한다는 뉴스가 난 일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밝혀졌다니 어쩐지 좀 씁쓸하다. ■

당신의 건강, 자연치유에 맡겨라

정순철

체육학 박사

인간의 수명은 본래 120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런데 왜 요즘처럼 40~50대에 성인병이 들어 아직도 일할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가? 그 주된 원인이 문명때문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발전하는 문명 때문에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운동부족증에 걸려서 각종 암이나 성인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약이나 병원에 자기의 건강을 맡긴다는 사실이다. 기침만 조금 해도 약국으로 달려가고 머리가 조금만 지끈거려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까?

필자는 그동안 건강전문가로서 사람의 건강은 자연치유에 맡기는 것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자연치유의 핵심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 자연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이다. 기계도 무리해서 억지로 사용하면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자기의 능력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장수의 첨경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가 각박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리가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선 삶의 목표를 너무 과중하게 설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계획을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세워서 단계별로 실천해나가면 그 단계마다 성취도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작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쌓였던 스트레스도 한꺼번에 해소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자연인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사명감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장수의 지름길이다.

둘째, 자연식품을 먹으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자연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발효식품인 김치가 이웃나라 일본에서 인기식품으로 개발되는 동안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는 피자나 햄버거에 완전히 밀려나서 천대받는 식품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가능하면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는 대신에 냉수를 의도적으로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어떤 식품이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을 질리도록 먹는 습관이 있는데, 되도록 식품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과식하면 도리어 건강에 지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식품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필자는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을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과일이나 생야채쥬스가 이상적인 자연식품이다. 여기에서도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먹을 것이 아니라 식품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연인의 잠을 잘 것을 권하고 싶다. 잠을 편안히 잘 자면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도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숙면을 위해서는 쾌적한 잠자리의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기의 오염으로 인하여 숨쉬기조차 힘든 혼탁한 도시속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도심을 벗어나서 교외로 이사갈 것을 권하고 싶다.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집안에 작은 정원이나 화분이라도 놓아서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고 현재의 시멘트바닥보다는 황토흙으로 된 방바닥이나 흙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중년 이후에는 쿠션 있는 침대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자연인의 운동을 할 것을 권하고 싶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요체이다.

당신의 건강은 의사나 약사나 현대 의학의 뜻이 아니라 바로 당신만이 지킬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할 것을 권하고 싶다. ■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발족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 등 업계와 정부와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민간 단체의 필요성이 업계와 정부에서 제기되어 94년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주요 기업체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협회 설립 발기위원회를 구성, 94년 11월 23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한국공정경쟁협회는 회원 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94년 11월 28일 현판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1) 공정경쟁 관련 출판 및 홍보사업 • 공정거래제도 해설집 발간 •
공정거래 심결집 발간 · 배포 • 기타 각종 자료 발간 (2)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이해 제고 • 교육 연수(강좌, 설명회 등) • 세미나 개최 • 상담사업 (3) 공정거래 관련 동향과 정보 서비스 사업 • 정보지 계간 「공정경쟁」 발간 · 배포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제도와 정책 운용 방향에 관한 정보 제공 (4)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정지원 • 프로그램의 보급 사업 (5) 회원의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제도 개선 사업 •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건의 • 외국의 공정거래제도 동향 연구 (6) 공정경쟁 제약 및 규제의 완화 • 경쟁 추진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 • 경쟁 라운드에의 사전 대비

97년도 주요 사업

(1)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과 운용 방향을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교육 및 연수 (2)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논문, 심결의 내용 분석, 경쟁정책에 관한 학계 · 재계 등 각계의 논단 및 해외 동향 등을 수록한 「공정경쟁」지 4회 발간 (3) 공정거래 관련 법규집 및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 해설집 발간 (4) 공정거래법에 관한 해설집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동정

(1997. 4. 21~6. 28)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 참석

- 일자·장소 : 4. 23(수), 국무총리실(국무총리 주재)
- 안건 :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규제개혁
추진방향 보고
- 공정위에서는 위원장이 참석

신문공동판매제도에 관한 토론회 참석

- 일자·장소 : 4. 30(수), 한국언론연구원
- 토론토 내용 : 신문공동판매제도의 구체적 실현방안 등
- 위원회에서는 유통거래과장 참석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사항 통지

「의료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공청회 참석

- ▶ 의료개혁위원회 개혁과제인 「의료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참석
- 일시 : 6. 5(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소비자보호국 업무편람 발간

- 소비자보호국 업무관련 법령·고시 및 지침, 주요 심결례, 표준문안등 수록

「일본의 규제개혁 성과와 전망」에 관한 강연회 개최

- 일시 : 6. 13(금) 16:30 ~ 18:00
- 대상 : 규제개혁작업반원 등 위원회 직원
- 장소 : 위원회 대회의실
- 강사 : 가네코 다카후이(일본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장)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대책반 회의

- ▶ 제1차 회의 개최
- 일자 : 6. 13(금), 대회의실

- 대상 : 사무처장(주재), 관련부처국장 및 민간 전문가
- 안건
 - 최근의 국제경쟁정책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 국제카르텔금지협정체결 대응방안
 - OECD규제개혁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운영직제 개정

- 8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접수 및 검토

OECD 경쟁정책위원회 참가

- ▶ 회의 참가
- 일자·장소 : 6. 18 ~ 6. 20,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김병균 상임위원 등 6명
 - 주요논의내용
 - 경성카르텔금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 공항서비스분야 규제개혁방안
 - WTO 「무역과 경쟁합동작업반」 구성보고
 - 수직적 제한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제8차 한·일 공정거래정책회의 개최

- ▶ 회의개최
- 일시·장소 : 6. 26(목), 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한국측 : 전윤철 위원장 등 국·과장급 19명
 - 일본측 : 네고로 위원장 등 5명
 - 의제 : 최근 공정거래정책동향,
최근 주요심결사례,
규제완화시책 추진동향,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협력